

**서울특별시영등포구중소기업육성기
금설치및운용조례안심사보고서**

1995. 3. 16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1995년 2월 22일 영등포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1995년 2월 27일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31회 영등포구의회(임시회) 제1차 시민보사위원회 (1995년 3월 16일) 상정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(제안설명자 : 시민국장 조남성)

가. 제안이유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기금의 용자대상 및 용자절차에 관한 조항(제7조 제3항)은 규칙으로 정한 사항이므로 삭제로자 함.

나. 주요골자

기금의 용자대상 및 용자절차에 관한 조항(조례 제7조 제3항) 삭제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: 유재한)

지방자치법 제133조(재산 및 기금의 설치)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으로서 조례 제7조(기금의 용자대상 및 용자절차) 3항 상환기간이 7조에 있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생각됨.

제2항에 보면 상환의 조건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규정 당시 상환에 대한 조건을 별도규정으로 정해야 하였으나 별도규정을 정하지 않았고 규칙에도 정하지 아니하므로 삭제하여 규칙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본안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**서울특별시영등포구중소기업육성기
금설치및운용조례증개정조례(안)**

의안 번호	307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'95. 2.
제출자 : 영등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○ 서울특별시영등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증 기금의 용자대상 및 용자절차에 관한 조항(제7조제3항)은 규칙으로 정한 사항이므로 삭제로자 함.

2. 주요골자

○ 기금의 용자대상 및 용자절차에 관한 조항(조례 제7조제3항) 삭제

3. 참고사항

○ 관련근거 :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

○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○ 협의 : 해당없음

○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

**서울특별시영등포구중소기업육성기
금설치및운용조례증개정조례(안)**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○ 제7조 제3항을 삭제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기금의 용자대상 및 용자절차) ①	제7조(기금의용자대상및용자절차) ①
②	②
③상환기간은 1년거치 2년 6월 균등분할 상환 으로 한다	③삭 제